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 차장검사 김현아

전화 053-573-3610 / 팩스 053-570-4207

보도자료  
2024. 2. 8.(목)

### 제 목

## 병원 직원 83명의 임금 9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장유강)는 의사·약사·간호사 등 83명 임금·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체불한 ○○요양병원 병원장 A를 오늘('24. 2. 8.) 기소하였습니다.
  - 병원장 A는 이미 같은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재판을 받고 있고, 재판 중인 사건을 합하면 총 피해 근로자수는 100명, 체불금 총액 14억 원임
- 피고인은 투자 실패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억 원 체불 등으로 '23. 8. 이후 이미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음에도, 28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, 그 직후부터 계속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한편, 대검찰청의 「설 명절 대비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지시」에 따라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, 법원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,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.
- 앞으로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여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# I

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 □ 피고인

- A(55세, ○○요양병원 원장)

※ '08. 3. 개원(199개 병상, 상시 직원 70명), '23. 11. 이후 운영 중단

### □ 공소사실 요지 [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

- '22. 8. ~ '23. 11. ○○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, 간호사, 간병인 등 근로자 총 83명의 임금·퇴직금 합계 약 9억 원 미지급

# II

## 수사 경과

- '23. 10. 25. 노동청, 수사 착수(진정서 접수)

※ 수사 초기부터 공공수사 전담검사가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체불이유, 청산 가능성, 체불 정황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수사지휘

- '24. 1. 16. 대구서부지청, 구속수사 지휘

피고인이 병원과 무관한 사업투자 실패로 20억 원대 채무가 존재하고, '22.부터 직원 17명에 대한 임금 약 4.8억 원을 체불하여 재판 중임에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후, 채용 직후부터 임금 체불한 사실 확인

- '24. 1. 30. 대구서부지청, 대검찰청 「설 명절 대비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」\*에 따라,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

\* 대검찰청은 '24. 1. 15. 전국 검찰청에 ▲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강화, ▲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 적극활용, ▲상습·악의적 체불사업주 정식기소, ▲ 체불사건 형사조정팀 설치·운영, ▲야간·휴일·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설 명절 대비 악의적·상습적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」 공문을 시행

※ 법원은,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

- '24. 2. 8. 대구서부지청, 피고인 불구속 기소

### III

## 수사 결과

### □ 대규모 임금체불 확인

- 피고인은 '18.~'19.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약 20억 원의 빚을 지고 이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'22.경부터 17명에 대한 임금 등 약 4.8억 원을 체불한 사실로 '23. 11.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,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.
- 그럼에도 '23. 8. 이후 28명의 간호사 등을 신규 채용하였고, 그 직후부터 계속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.
- 피해규모(총 100명, 14억 원대), 동종범행 전력, 체불의 상습성 등 죄질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.

### □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도모

- 관내 상당규모의 요양병원 운영 중단으로, 대규모 실직 사태와 환자들의 전원 등 지역의료에 직·간접으로 큰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.
- 피고인의 재산관계 조사결과, 단기간 내 임금청산이 어렵다고 보고, 노동청과 협의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,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.

※ (대지급금 제도)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여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

### IV

##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, 대검찰청의 「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」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,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